

2026-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지원사업 운영 계획

- ◆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부담이 있는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생활비(주거 관련 비용) 보조 용도의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하고자 함

1 지원개요

- 지원방법: 대학 자체 지원기준을 수립하여 장학생 선발
- 교부금액(재단→학교 / 1학기 기준): 금29,000,000원(금이천구백만원)
 - 가. (사업비) 금27,200,000원(금이천칠백이십만원)
 - 나. (운영비) 금1,800,000원(금일백팔십만원)
- 장학성격: 생활비

2 지원기준

- 지원대상: 재학생(외국인 제외)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- 필수요건
 - 가.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완료된 9구간 이하 대학생
 - 나. 2026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('86.11 이후 출생)로 미혼인 자
 - ※ 단, 1월 1일 출생자(주민등록상)로 만 40세가 되는 학생은 만 39세로 봄
 - 다. 당해 학기 학자금 신청 시,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* 자격 기준은 2026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에 따름
 - 라.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
 - 마.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*에 해당하는 자
 - ※ 단, 사망 또는 부양관계단절 등 부모 주소정보가 모두 없는 경우 원거리 심사 생략(면제)
 - * 원거리 지역: 청양군 이외 모든 지역
 - 바.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

구분	성적 기준
신·편입생, 재입학생	○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
재학생	○ 직전학기*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을 획득한 자 ○ 이수학점은 취득학점 기준(신청학점 기준 적용불가)이며, 이수학점 산출 시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취소과목, F학점, 이수 후 포기과목은 미반영 ○ 장애인 학생은 백분위 점수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○ 자립준비청년(보호아동 포함)은 백분위 점수 기준 미적용 ○ 졸업 또는 초과학기 학생은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

※ 그 외 성적 산출 기준 등은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업무처리기준에 따름

○ 우선지원 선발기준 [대학자체기준]

구분	선발 기준
우선순위	① 비(非)기숙사생 → ② 교내 소수학생* → ③ 기초 및 차상위계층 → ④ 다자녀 → ⑤ 낮은 소득분위(1~2구간) → ⑥ 낮은 학년 → ⑦ 연소자(주민등록상 나이) 순

*교내 소수학생: 장애, 다문화, 북한이탈주민, 아동양육시설 대학생, 조손, 한부모가정 등

○ 지원제외자: 국토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및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을 수혜한 자

※ (병급불가) 충남도립대학교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사업 수혜자

(병급가능) 청양군 기본소득 지원사업* 수혜자

* 기본소득 지원사업은 주거비 지원사업 아님 (6. 24. 장학재단 유선 답변)

3 지원내용

○ 지원금액: 월 최대 20만 원* (연간 최대 240만 원)

○ 지원범위: 월 20만 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

• 주거 관련 비용: 임차료*(전·월세, 보증금** 등), 주거 유지·관리비(수선유지비, 공동주택 관리비 등), 수도·연료비(상하수도, 전기, 가스, 열, 등유, 연탄등),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

상환액 등

※ 단,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 (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)

* 임차료는 유형(주택, 기숙사, 고시원 등)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

** 보증금의 경우 「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」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환산율(연 4%)을 준용, 월 환산 후 월 차임으로 산정함

○ 지원 기간: 선정된 해당 학기에 지원하되, 학제별·학생별 한도를 모두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

※ 방학 중 미지원하되,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 방학 중 지원 가능

※ 주거안정장학금은 학기별 1회라도 수혜한 경우 1개 학기 수혜로 산정되며 1학기는 매년 3월부터 8월까지, 2학기는 매년 9월부터 차년도 2월까지로함

○ 지급방식: 매월 학생이 제출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 확인 후 월 지급 한도 범위 이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비용(실비)을 개별 지급

※ 학생이 제출한 지급 요청서에 따라 별도 증빙서류 검토 없이 지급 가능하나, 허위·과다청구,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신고 등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학생에게 소명 요청 할 수 있음

4 향후계획

○ 주거안정장학금 신청(학생→재단): ~2026. 9. 9.(수)

○ 주거안정장학금 지급(대학→학생): ~2026. 12. 31.(목)